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 1 수수료 부과

- ◇ 개인형IRP는 대상기간 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 응당일 또는 지급일에 후취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구분	영업점창구 개설 시 연간 수수료율				전자금융 개설 시 연간 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가입자 납입금	1억원 미만	0.08%	1억원 미만	0.20%	1억원 미만	0.05%	1억원 미만	0.20%
	1억원 이상	0.07%	1억원 이상	0.18%	1억원 이상	0.03%	1억원 이상	0.18%
퇴직금	1억원 미만	0.25%	1억원 미만	0.20%	1억원 미만	0.15%	1억원 미만	0.20%
	1억원 이상	0.20%	1억원 이상	0.18%	1억원 이상	0.15%	1억원 이상	0.18%

- \*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가입자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고, 퇴직 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 수수료 계산 예시(전자금융으로 개설한 개인형IRP 가입자납입금 평균잔액 3억원으로 가정 : 3억원 X 0.03% + 3억원 X 0.18%)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중도해지 세제

- ◇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 또는 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 할 경우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과세됨

## 3 연금수령 조건

- ◇ ① 만 55세 이상으로
- ◇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함

## 4 연간 납입한도 설정

- ◇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상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

## 5 적립금운용

- ◇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정해 놓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을 편입한 후 단기간 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상세)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계약 체결 전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운용 자산의 수익구조, 손실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다음 고객님의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는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지시하여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반드시 개별 운용 자산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형 IRP 개요

구분	주요내용												
제도개요	<p>□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입금한 부담금 또는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함.</p> <p>* 퇴직급여제도(DB, DC, 기업형IRP, 퇴직금제도)가입자의 퇴직금 :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 신한은행 DC가입자의 경우 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 신한은행 개인형IRP로 이전 가능</p>												
가입대상 및 확인서류	<p>□ 가입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급여제도(DB, DC,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수령자</li> <li>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형IRP)의 가입자로서 개인부담금으로 개인형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자</li> <li>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li> </ol> <p>□ 가입대상별 자격증빙 확인서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입대상</th> <th>확인서류</th> </tr> </thead> <tbody> <tr> <td>I. 당행 퇴직연금가입자</td> <td>없음</td> </tr> <tr> <td>II. 타금융기관 퇴직연금가입자</td> <td>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td> </tr> <tr> <td>III. 자영업자</td> <td>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축산·어업 등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제출 가능</td> </tr> <tr> <td>IV.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가입자</td> <td>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td> </tr> <tr> <td>V.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및 퇴직금제도 근로자</td> <td>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td> </tr> </tbody> </table>	가입대상	확인서류	I. 당행 퇴직연금가입자	없음	II. 타금융기관 퇴직연금가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III.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축산·어업 등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제출 가능	IV.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가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V.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및 퇴직금제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가입대상	확인서류												
I. 당행 퇴직연금가입자	없음												
II. 타금융기관 퇴직연금가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III.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축산·어업 등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제출 가능												
IV.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가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V.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및 퇴직금제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가입방법	□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신한 쏠(SOL)												

**입금한도  
및  
세액공제**

- **입금한도**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상품, DC/기업형IRP/개인형IRP의 가입자부담금 합산)
  - 1주택 고령가구(부부 中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분은 추가납입 허용(1억원 한도)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상품 합산)
  - ISA 만기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개인형IRP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효과 예시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효과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개인형IRP 900만원	900만원 X 16.5% = 1,485,000원	900만원 X 13.2% = 1,188,000원

**수수료**

- **납부시기 및 방법** : 매년 계약응당일 또는 지급일에 후취(적립금 자동 차감)
  - 적립금 자산 매각 순서(계약서에서 정한 매각 순서)에 따라 매각하여 자동 차감됨
- **계산식** : (전년도 계약응당일(또는 신규일)~해당년도 계약응당일 전일의 총 적립금 평가금액 평균) × (당해 계약응당일 전일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경과일수 ÷ 365
- **수수료율**

구분	창구/비대면	수수료 구간	운용수수료	자산수수료	합계
가입자 부담금	전자금융	1억원 미만	0.05%	0.20%	0.25%
		1억원 이상	0.03%	0.18%	0.21%
	창구	1억원 미만	0.08%	0.20%	0.28%
		1억원 이상	0.07%	0.18%	0.25%
퇴직금	전자금융	1억원 미만	0.15%	0.20%	0.35%
		1억원 이상	0.15%	0.18%	0.33%
	창구	1억원 미만	0.25%	0.20%	0.45%
		1억원 이상	0.20%	0.18%	0.38%

- ▶ 개인형IRP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금'과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계산하며, '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금'과 '가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함
  - 장기계약할인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 만 34세 이전 신규 시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 연금수령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함
  - 계약년수 4차년도 이상 계좌의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함
  - 퇴직금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미만 계약해지시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

## 2 상품운용

구분	주요내용																		
운용자산	□ 예금, 펀드, 현금성 대기자산 등																		
운용방법	□ 고객의 개별 운용지시에 의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됨																		
운용자산별 매수/매도	<p>□ 운용자산별 매수/매도 소요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기예금</th> <th>국내채권형펀드</th> <th>국내채권혼합형펀드</th> <th>국내주식형펀드</th> <th>기타상품</th> </tr> </thead> <tbody> <tr> <td>매수</td> <td>T+1</td> <td>T+2</td> <td>T+2~3</td> <td>T+2</td> <td>T+2~3</td> </tr> <tr> <td>매도</td> <td>T+1</td> <td>T+3</td> <td>T+4~5</td> <td>T+4</td> <td>T+3~10</td> </tr> </tbody> </table> <p>※ 매수/매도 신청일이 T일이며, 소요기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                      ※ 지급/해지 시 운용상품 중 정기예금과 다른 상품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최종 상품 매도 완료일로부터 1영업일이 더 소요됨                      ※ 소요기간은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운용자산 별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람</p>	구분	정기예금	국내채권형펀드	국내채권혼합형펀드	국내주식형펀드	기타상품	매수	T+1	T+2	T+2~3	T+2	T+2~3	매도	T+1	T+3	T+4~5	T+4	T+3~10
구분	정기예금	국내채권형펀드	국내채권혼합형펀드	국내주식형펀드	기타상품														
매수	T+1	T+2	T+2~3	T+2	T+2~3														
매도	T+1	T+3	T+4~5	T+4	T+3~10														
기타	<p>□ 관련 법령에 따라 <b>주식형 및 주식혼합형</b>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b>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b>에서만 운용하실 수 있고, 채권혼합형(주식 40% 이하)의 펀드인 경우 100% 까지 운용 가능함</p> <p>□ 상품 매수완료 전까지는 현금성 대기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되며, 운용지시일과 결제일간의 일자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음</p> <p>□ 신규 가입일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가입 후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p>																		

## 3 사전지정운용제도

구분	주요내용
적용	<p>□ 사전지정운용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일정기간동안 별도 운용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li> </ul> <p>□ 최초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하였을 때(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됨</li> </ul> <p>□ 전체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가 있는 상품(예금, 이율보증보험 계약, 원리금보장ELB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시, 가입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됨</li> </ul>
변경	□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후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으로 지정 가능.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변경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됨
상품안내	<p>□ 디폴트옵션 상품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이며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의 제2항에 따라 한 가지 상품을 선정하여야 함</p>



<디폴트옵션 상품 자세히 알아보기>

## 4 지급/해지

구분	주요내용															
연금수령	<table border="1" data-bbox="347 282 1489 613">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2013년 2월 28일 이전</th> <th colspan="2">2013년 3월 1일 이후</th> </tr> <tr> <th>신규한 개인형IRP</th> <th>DB/DC/기업형IRP에서 퇴직금이 이체된 경우</th> <th>가입자부담금만 입금한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최소 가입기간</td> <td>5년 이상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td> <td>해당 없음</td> <td>5년 이상</td> </tr> <tr> <td>최소연금 수령기간</td> <td>5년 이상</td> <td>10년 이상 (DB/DC/기업형IRP 가입일자가 2013.02.28 이전인 경우 5년)</td> <td>10년 이상</td> </tr> </tbody> </table> <p data-bbox="309 636 1484 792"> <b>□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b> :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연금수령 신청 가능함                      - 만 55세 이상                      - 최초 입금일로부터 연금수령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                      ※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만55세 조건만 충족되면 즉시 연금수령 가능함                 </p> <p data-bbox="309 815 1321 1043"> <b>□ 연금수령방식</b>                      - 연간 <b>연금수령한도</b> 내 지급주기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금액지정방식 또는 수시인출방식으로 신청 가능함                      (단, 연금수령 한도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연금 실수령액은 지급된 금액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 금액임                 </p> <p data-bbox="347 1066 1465 1164"> <b>※ 연금수령한도란?</b>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거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가능                 </p> <div data-bbox="347 1178 1489 1234"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text{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적립금 평가총액} / (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120\%]</math> </div> <p data-bbox="347 1249 1471 1317">                     주) 연금수령연차 : 2013.3.1이전 가입한 계좌의 기산연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거 6년차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 연금수령 가능 년도인 2013년도가 6년차, 2014년도가 7년차, 2015년도가 8년차에 해당                 </p>	구분	2013년 2월 28일 이전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한 개인형IRP	DB/DC/기업형IRP에서 퇴직금이 이체된 경우	가입자부담금만 입금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 없음	5년 이상	최소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DB/DC/기업형IRP 가입일자가 2013.02.28 이전인 경우 5년)	10년 이상
구분	2013년 2월 28일 이전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한 개인형IRP	DB/DC/기업형IRP에서 퇴직금이 이체된 경우	가입자부담금만 입금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 없음	5년 이상													
최소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DB/DC/기업형IRP 가입일자가 2013.02.28 이전인 경우 5년)	10년 이상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p data-bbox="309 1357 1471 1464"> <b>□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아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이 가능함. 단, ⑥와 ⑦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고, ⑨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함.</b> </p> <ol data-bbox="347 1478 1484 2128"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li> <li>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li> <li>③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li> <li>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li> <li>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li> <li>⑥ 가입자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li> <li>⑦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⑧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⑨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li> </ol>															

해지	□ 고객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 가능하며, 입금 원천과 해지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됨
계좌이체	□ 개인형IRP → 개인형IRP: 가능 □ 개인형IRP ↔ 연금저축: 가입자 연령이 만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이체 하는 경우에만 가능
기타	□ 운용 상품의 매도 소요기간에 따라 지급/해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5 적용세제

구분	주요내용															
개인형IRP 입금원천	<table border="1"> <tr> <td rowspan="2">① 퇴직금</td> <td>②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원금</td> <td rowspan="2">③ 운용수익</td> </tr> <tr> <td>④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td> </tr> </table>	① 퇴직금	②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원금	③ 운용수익	④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											
① 퇴직금	②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원금		③ 운용수익													
	④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															
입금 원천별 적용 세제	<p>□ 일시금 수령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적인 경우</th> <th>부득이한 경우<sup>주1)</sup></th> </tr> </thead> <tbody> <tr> <td>① 퇴직금</td> <td>퇴직소득세</td> <td>퇴직소득세율 x 70%</td> </tr> <tr> <td>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td> <td>기타소득세 16.5%</td> <td>연금소득세<sup>주2)</sup> (3.3~5.5%)</td> </tr> </tbody> </table> <p>□ 연금 수령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금</th> </tr> </thead> <tbody> <tr> <td>① 퇴직금</td> <td>퇴직소득세율 x 70%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율x60%]</td> </tr> <tr> <td>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td> <td>연금소득세 (3.3~5.5%)</td> </tr> </tbody> </table> <p>④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은 과세 제외 : 익년도 이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납부 후 해지신청점 또는 관리점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함 (전년도 확인서는 7월 초부터 세무서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p> <p>※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p> <p>주1)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연금 지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신고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사회재난지역의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입원치료 지출금액 : 의료비 + 간병비 + (본인 휴직/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li> <li>- 해외이주 : 2017년 2월 3일 이후 입금한 퇴직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li> </ul> <p>주2) 연령별 원천징수세율 : 만 80 세 이상 3.3%, 만 70대 4.4%, 그 외 5.5%</p> <p>※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x 10%)가 별도 부과됨</p>	구분	일반적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sup>주1)</sup>	① 퇴직금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x 70%	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sup>주2)</sup> (3.3~5.5%)	구분	세금	① 퇴직금	퇴직소득세율 x 70%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율x60%]	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구분	일반적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sup>주1)</sup>														
① 퇴직금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x 70%														
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sup>주2)</sup> (3.3~5.5%)														
구분	세금															
① 퇴직금	퇴직소득세율 x 70%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율x60%]															
② 가입자부담금 + ③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 6 유의사항

-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가 선택하여 운용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지급/해지 시 사유별로 다른 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개인형IRP 계약 시 유의할 사항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으로 운용관리/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상품별 설명서 및 약관을 추가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유사한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om](http://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